

배포 일시	2022. 8. 30.(화)		
담당 부서	주택정책관	책임자	팀 장 박동주 (044-201-3321)
	주택임대차지원팀	담당자	사무관 채한규 (044-201-3314)
보도 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
< 보도내용('22. 8. 30. 한국일보) >

- ◆ 1년 계약했는데 ‘법대로’ 2년 산다는 세입자.. 애타는 집주인
 - 합의하에 1년 계약... 법은 “세입자가 원하면 2년 살아라”

-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지난 7월부터 ‘임대차 제도개선 TF’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며,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시장기능 정상화와 임대인-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
※ (참고) 임차인보호제도 도입시기

- 최소 거주기간 2년(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)은 1989년 도입
-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금지(법 제10조)는 1981년에 도입
- 계약갱신요구권·전월세상한제(법 제6조의3제1항, 제7조제2항)는 2020년에 도입